	지도교수	학과주임
월 일		

타 학과 교과목 학점 인정원

(대학원 법학과용)

- 20 학년도 학기
- 과정 : 박사/석박통합/석사
- 학과 :
- 학번 :
- 성명 :

대학원 법학과 내규에 의거하여 상기 학생의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을 허가하며, 자기 전공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에서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 법학과 내규 제2조 5항에 의거, 법학과 외의 타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자기 전공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에서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이전에 학점인정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수대학원의 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설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명	담당교수 확인란
※ 인정 요청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신청인 (인)